

#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## - 검 토 보 고 -

### □ 제안이유

-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·운용하고 있는 소득기금 융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
-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,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조례명중 “운영” 을 “운용” 으로 변경
- 융자금 대부이율 연5%를 연3%로 하향 조정(안 제5조제2항)
- 대부신청시 읍·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의 공동 추천 삭제  
(안 제6조제1항)
- 대부신청시 예산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 사항 삭제  
(안 제6조제2항)

### □ 참고사항

-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업무개선계획
- 한국은행콜금리 96년 12.28%에서 현재는 4.37% 대출
- 시중은행 농어촌구조개선자금 99년 5.5%에서 현재는 4.0% 대출

## 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 하는데 있어서 융자금의 대부이율과 연대 보증제도를 개선하여 농촌지역의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융자금 대부이율 연 3%의 하향 및 신청요건 완화로 대부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아 엄격한 심사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융자추천토록 하고 또한 자금을 융자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과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 및 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개선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